

2007년 6월 30일

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의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 대표단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까지, 대한민국은 *우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것이다.

양국 대표단은 모든 서류 및 서신의 국제 및 국내 특급배달서비스는 미합중국 우정청의 독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또한 양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현 중